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793 발의연월일: 2021. 4. 29.

발 의 자:홍석준·조경태·김용판

김예지・김 웅・백종헌

권성동 · 김형동 · 배혂진

하영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 하여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 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되도록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활용품의 가격하락·수급 불안정 등 시장 변화에 따른 민간수거업체 수익성 악화로 수거거부 및 계약해지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그간 민간에 의존하던 폐지, 고철,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며, 재활용품 수거를 지자체가 직접 또는 대행계약을 통해 하도록 하면서 계약해지 등 수 거거부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5조의3 신설 및 제14조의6).

법률 제 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할 구역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 구역 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 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 반입수수료의 2배의 범위 내 에서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

- 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조의2제 2항에 따라 관할구역 외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때 그 처리시설이 제4조 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처리시설인 경우의 반입협력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1. 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의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 민 지원
- 2. 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의 확충이나 개선
- 3. 폐기물의 처리 방법의 발굴이나 개선에 관한 사업
- 4. 그 밖에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사업
- 제14조제3항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를 "폐식용유"로 한다.
- 제1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6(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대행 이외에 폐지, 고철, 폐합성수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특정 품목"이라 한다)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일괄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1. 계약을 맺은 품목 중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 반한 경우
- 2. 분리 배출한 품목을 혼합해서 수집 · 운반하거나 보관한 경우
- 3. 처리 능력의 초과, 휴업이나 폐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집·운반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 4. 그 밖에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경우
-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3개월 단위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대행계약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품목의 배출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제7항 본문 중 "따라 허가"를 "따른 허가 또는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로 한다.

제59조제1항제4호 중 "제2항"을 "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 외에서 위탁 처리 되고 있는 폐기물은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조의2(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
	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할 구역
	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모두 처리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
	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
	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u><신 설></u>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제
	5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관할 구역 외에서 발생
	한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한 특
	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폐기물

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 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 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6조의 반입수수료 의 2배의 범위 내에서 반입협력금 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 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 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 다.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조 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외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때 그 처리시설 이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폐기물처리 시설 외의 처리시설인 경우의 반 입협력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 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1. 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처리하는시설의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주민 지원
- 2. 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의 확충이나 개선
- 3. 폐기물의 처리 방법의 발굴이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② (생략)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수 있다.

④ ~ ⑩ (생 략) <신 설>

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일괄

나 개선에 관한 사업

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1. 계약을 맺은 품목 중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경우
- 2. 분리 배출한 품목을 혼합해서 수집·운반하거나 보관한 경우
- 3. 처리 능력의 초과, 휴업이나 폐 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집ㆍ 운반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3개월 단위로 계약금액을 조정하 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⑥ (생략)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 ⑪ (생 략)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대행계약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품목의 배출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그 계약내용을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페기물처리업)①~⑥(현행과 같음)

행과 같음)
7
따른 허가 또는 제11항
에 따른 변경허가
(8) ~ (17) (현행과 간음)

제59조(수수료)	① 다음	음 각 .	호의	어
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환경	부
령으로 정하는	는 바에	따라	수수	료
를 내야 한다.				

- 1. ~ 3. (생 략)
- 4. 제30조제1항 및 <u>제2항</u>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 ② (생 략)

제59조(수수료) ①
1. ~ 3. (현행과 같음)
4 <u>제2항, 제50조</u>
제1항 및 제6항
② (현행과 같음)